

## 한·중 商事 분쟁 해결 - 중재제도를 활용하자

KOTRA 기획조정실  
과장 흥 창 표

2001년도 한국과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315억불로 이중 대중 수출은 182억불, 수입은 133억불로 약 49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0.2%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작년말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2002년도 한중간 교역규모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간 무역규모 및 투자진출 확대와 함께 이를 둘러싼 분쟁 역시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특히 지방보호주의가 성행하고 있고, 法治국가라기 보다는 여전히 人治국가로

서의 특색이 강하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

국내 유일의 국제분쟁 전담처리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한중간 무역분쟁 사건을 보면, 2001년도의 경우 중재사건이 7건으로 전체 국제중재 사건 643건의 10.7%, 금액은 55억원으로 전체 사건금액 3,465억원의 11.8%를 차지했다. 그리고 알선사건은 7건, 5억원으로 전체 국제알선 사건 213건, 170억원의 3%를 점하고 있다.

## [원인별 발생현황 (1998~2001년)]

(단위 : 건)

원인 \ 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계
대금	증재	3	3	4	14
	알선	8	6	2	18
	소계	11	9	6	32
선적	증재	1	4	4	10
	알선	2	1	2	6
	소계	3	5	6	16
품질	증재	1	–	–	1
	알선	4	3	5	14
	소계	5	3	5	15
기타	증재	2	–	5	9
	알선	3	2	–	7
	소계	5	2	5	16
계	증재	7	7	13	34
	알선	17	12	9	45
	소계	24	19	22	79

주) 1. 3대 원인 : 4년 평균 대금미지급 40.5%, 선적불이행 20%, 품질불량 19%

2. 기타 : 계약불이행, 수량부족, 원인미상 등 3. 증재사건은 청구원인 등이 분명한 자료원) 대한상사증재원

## [계약형태별 발생현황 (1998~2001년)]

(단위 : 건)

원인 \ 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계
매매, 투자	증재	6	7	11	28
	알선	17	10	9	43
	소계	23	17	20	71
임가공	증재	–	–	1	2
	알선	–	1	–	1
	소계	–	1	1	3
대리점	증재	1	–	1	4
	알선	–	–	–	–
	소계	1	–	1	4
운송	증재	–	–	–	–
	알선	–	1	–	1
	소계	–	1	–	1
계	증재	7	7	13	34
	알선	17	12	9	45
	소계	24	19	22	79

주) 계약형태별로는 매매 및 합작투자 사건이 총 89.8%를 차지

자료원) 대한상사증재원

## 특집II 한·중 商事 분쟁 해결 – 중재제도를 활용하자

이러한 수치는 국내기업이 소송으로 처리하는 사건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같은 외국 중재기관에서 중재로 해결한 통계 수치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제 한중 기업간의 상사분쟁 건수와 금액은 표에서 나타나는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중 수교이후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중국과 무역을 하는 기업인이라면 ‘판시(關係)’를 중시하는 중국인의 상관습을 이제 어느정도는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인 특유의 ‘판시’는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중국기업과의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를들어 한국업체가 중국 A기업과 무역분쟁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자.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법정 소송까지 갈 경우 공정한 판정을 내려야할 법관이 A기업의 사장 또는 직원과 친척, 친구, 동료, 선생, 또는 학교나 동향 선후배 등 끈끈한 판시망으로 얹혀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러한 중국기업인의 판시망을 고려할 때, 결국 우리 기업인으로서는 백전필쾌로 끝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인이 일단 중국인민법원으

로까지 간다고 하면 이는 곧 중국 특유의 판시망으로 강력하게 묶여진 ‘보호주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곧 시작도 하기 전에 반쯤 지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셈이다.

결국 이러한 중국 법원의 판시망과 보호주의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 기업인이 중국과의 상사분쟁에 휘말릴 경우 마지막 재판까지는 생각하지 않는게 좋다. 소송까지 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결국 중국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맺을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중국기업이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으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중국 법원의 ‘보호주의’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절대 중국 법원으로까지는 가지말아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법원 대신 택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중재(arbitration)’를 이용하는 것이다. 중재란 ‘중재기관이 분쟁 당사자의 합의 또는 관련 법규정에 의거하여 분쟁에 대하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판정을 내리는 분쟁해결 제도’를 뜻한다. 당사자들이 선임한 중재인단의 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

기 때문에 재판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당사자들 스스로 중재인을 선정하게 되므로 중재인의 판단에 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재의 효력은 국가공권력을 발동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리도 보장된다. 이는 소송과 차이가 없으나 소송은 법원에서 법관이 처리하는 반면 중재는 법원이외의 중재기구에서 중재원이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소송은 이심제로서 일심에서 불복하면 상소가 가능하지만 중재는 일심제로서 2차 중재의 기회가 없을 뿐 아니라 법원으로 상소할 수

도 없다.

중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은 '중국 국제경제 무역 중재 위원회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Arbitration Commission : CIETAC)'로 본부는 북경에 있고 상해와 심천에 각 분회가 있다. 중재기구는 쟁의발생의 당사자가 선정하는 것으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공평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 역시 중국에서 중재기구를 선택할 경우 보통 이 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국제적 경제 및 무역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취급하고 외국 당사자간의 분쟁을 처리하며, 본부는 북경에 소재하고 1984년에 심천, 1988년에 상해에 각각 분회를 설치하고 있음. 분회는 북경의 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당사자는 북경의 위원회 또는 분회에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음.

국무원 결정에 따라 설립된 또 하나의 중재기관은 해사중재위원회(CMAC)로, 1958년에 설립되어 당초에는 해난구조, 선박충돌, 용선계약에 관한 분쟁을 취급했지만 1982년에 모든 해사 분쟁에 관여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확대함.

중국의 중재법은 중재인의 선임에 있어서 당사자의 선정과 중재기구의 지정을 서로 결합한 특수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 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코자 할 경우 최소 1명 이상의 외국 국적의 중재원을 선택할 수 있

다. 이러한 점때문에 중국특유의 '보호주의'를 타파하고, 객관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중재방식을 취할 경우 또하나 장점은 중재는

## 특집 II 한·중 商事 분쟁 해결 – 중재제도를 활용하자

반드시 분쟁발생지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중재를 택하면 쌍방이 서로 합의 하에 지역별 중재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만약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를 중재기구로 지정했다면 북경, 상해, 심천 등 3곳에서 중재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기업이 소재한 지방 법원까지 가지않아도 된다. 세계 각지의 중재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법원을 통할 경우 판시망에 희생되지 않고 비교적 공정한 중재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한 점으로 지적된다.

중재방식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쌍방 당사자가 계약서상에 반드시 중재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이나 투자진출시 보통 초기 계약서 작성시 중재조항을 넣게 되는데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상사분쟁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작성해 넣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에 중재조항을 넣지 않고 있다가 분쟁발생후 중재를 이용코자 할 경우 중국측이 십중팔구 반대할 것이다. 중국기업 입장에서 볼 때 최악의 경우라도 법정 재판으로 몰고 가는 것이 승소 가능성이 면에서 높고, 재판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한국측이 자포자기하도록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인으

로서는 계약서 체결시 반드시 중재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중국에서 중재협의는 ‘엄격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 상에 중재에 대한 희망과 세부 내용, 중재기구의 선정 등 중재관련 내용이 자세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중재기구 선정 내용이 없을 경우 중재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중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의 중재법에 의하면 중재협의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요하며, 계약에 포함된 중재조항 또는 분쟁 발생 전이나 후에 독립하여 서면으로 체결하는 중재협약에 의한다. 중재법 제16조는 중재협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그 내용 중에 (1) 중재를 청구하는 의사표시, (2) 중재사항, (3) 중재기구의 선정 등 3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3가지 사항은 구체적인 안건에 대하여 인민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특정한 중재위원회에 관할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빼져서는 안될 요소들이다.

예를 들어 쌍방이 만약 계약서 상에 ‘본 계약서에서 어떠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당사

자간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며, 이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라고 기재할 경우 이러한 중재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재기구가 명확하게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본 계약서에서 어떠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간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며, 이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 중재기구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하며 중재지점은 북경(또는 상해, 심천)으로 한다.'라고 기재해야 한다. 만약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를 중재기구로 선정할 경우에는 중재지점은 꼭 밝히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 경우에는 북경에서 중재를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지점을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명시된 지점(북경, 상해, 심천)에서 중재되어야 한다.

우리 기업인이 중국과의 거래에 있어 아직까지 중재조항을 넣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종종 생략하거나 또는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계약서 조차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무역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많은 기업인들이 호탕하게 'OK, 没問題(문제없다)'를 외치면서 거래에 나서고 있지만, 중재조항이 없을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

름없다. 일부 기업인의 경우 서면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서도 정작 중재의 개념이 부족하여 중재조항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보거나 법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소송의 경우 피고인의 소재지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적, 금전적으로 손해가 클 뿐 아니라 얹기고 설친 판시망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도 낮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밖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중재조항도 넣었으나 그 내용이 불완전하여 실제 중재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계약서 체결시에는 앞서 말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중재조항을 명확하게 삽입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인민법원이 사실상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산당이나 행정권력으로부터 많은 간섭과 영향을 받고 있어 그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심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행정간섭을 덜 받고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중재제도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법적 분쟁을 만났을 경우 고려해 볼 만한 중요한 분쟁해결 제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재조항은 우리 기업인을 보호해줄 유일한 보장방안이며, 중재기구 역시 우리 기업인의 권리를 지켜줄 유일한 장소인 것이다.